

대구광역시달서구의회  
제 316 회 정례회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2025. 11.

정 순 옥 의원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

# 제 안 설 명 서

제안자: 정순옥 의원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에 대해 제안 설명드리겠습니다.

**먼저, 제안 이유를 말씀드리겠습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아동친화모니터단의 제안을 반영하여 아동의 의견이 정책의 실질적 변화를 이끌어내, 아동들이 더 안전하고 자유롭게 놀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데 중점을 두고 있습니다.

개정안은 놀이공간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을 중심으로 아동의 권리와 복지가 강화될 수 있도록 보장합니다.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합니다.

**다음은 일부개정조례안의 주요내용에 대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 제7조에 놀이공간의 안전 확보를 규정하고, 경제적, 사회적 취약계층에 속하는 아동들이 공평하게 놀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을 마련하였습니다.

**□ 본 일부개정조례안에 대한 사전조치 사항으로는**

- 개정 주요 내용을 2025년 11월 14일부터 2025년 11월 26일 까지 달서구의회 홈페이지 등에 입법예고하여 주민 의견을 수렴하였으나, 제출된 의견은 없었습니다.

**□ 이상에서 설명 드린 바와 같이,**

- 본 일부개정조례안은 놀이공간의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아동에 대한 지원 보장으로 아동친화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하는 기반을 마련하기 위한 것으로, 원안대로 가결하여 주시기를 요청드립니다.
- 이상으로 제안 설명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정순옥 의원 대표 발의】

의안 번호	00925112
----------	----------

발의연월일: 2025. 11. 14.

발 의 자: 정순옥 김기열 손범구  
황국주 장호섭 박종길

## 1. 제안이유

- 본 일부개정조례는 아동친화모니터단의 제안을 바탕으로 아동의 의견을 정책에 실질적으로 반영하며,
- 놀이공간 안전관리와 취약계층 아동 지원을 강화하여 아동의 놀 권리를 보장하고, 이를 통해 아동친화도시로서 한 단계 더 도약할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고자 함

## 2. 주요내용

- 놀이공간의 안전관리를 규정하고, 취약계층 아동들이 공평하게 놀이 기회를 가질 수 있도록 지원방안 마련(안 제7조제2항, 제3항 신설)

## 3. 일부개정조례안: 붙임

## 4. 신·구조문 대비표: 붙임

## 5. 참고사항

- 관계법령  
- 「아동복지법」 제2조 및 제4조

-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UN)」 제5조 및 제31조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

○ 비용추계서: 비대상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의 놀 권리 보장에 관한 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7조제1항제2호부터 제4호까지를 각각 제4호부터 제6호까지로 하고, 같은 항에 제2호 및 제3호를 각각 다음과 같이 신설한다.

2. 놀이공간의 안전관리
3. 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

###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 · 구조문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p>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① 구청장은 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p> <p>1. (생략)</p> <p><u>&lt;신설&gt;</u></p> <p><u>&lt;신설&gt;</u></p> <p>2. ~ 4. (생략)</p> <p>② · ③ (생략)</p>	<p>제7조(아동의 놀 권리 보장을 위한 사업) ① ----- ----- -----.</p> <p>1. (현행과 같음)</p> <p>2. <u>놀이공간의 안전관리</u></p> <p>3. <u>사회적 취약계층 아동의 놀 권리 보장</u></p> <p>4. ~ 6. (현행 제2호부터 제4호까지와 같음)</p> <p>② · ③ (현행과 같음)</p>

# 【 관계 법령 】

## □ 아동복지법

제2조(기본 이념) ① 아동은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고 자라나야 한다.

② 아동은 완전하고 조화로운 인격발달을 위하여 안전한 가정환경에서 행복하게 자라나야 한다.

③ 아동에 관한 모든 활동에 있어서 아동의 이익이 최우선적으로 고려되어야 한다.

④ 아동은 아동의 권리보장과 복지증진을 위하여 이 법에 따른 보호와 지원을 받을 권리를 가진다.

제4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책무)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안전·건강 및 복지 증진을 위하여 아동과 그 보호자 및 가정을 지원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보호대상아동 및 지원대상아동의 권익을 증진하기 위한 정책을 수립·시행하여야 한다.

③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아동이 태어난 가정에서 성장할 수 없을 때에는 가정과 유사한 환경에서 성장할 수 있도록 조치하며, 아동을 가정에서 분리하여 보호할 경우에는 신속히 가정으로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한다.

④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아동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이 자신 또는 부모의 성별, 연령, 종교, 사회적 신분, 재산, 장애유무, 출생지역 또는 인종 등에 따른 어떠한 종류의 차별도 받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시책을 강구하여야 한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에서 규정한 아동의 권리 및 복지 증진 등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수립·시행하고, 이에 필요한 교육과 홍보를 하여야 한다.

⑦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아동의 보호자가 아동을 행복하고 안전하게 양육하기 위하여 필요한 교육을 지원하여야 한다.

## □ 유엔 「아동의 권리에 관한 협약」

### 제5조

아동이 이 협약에서 인정된 권리를 행사함에 있어서 당사국은 부모 또는 적용가능한 경우 현지 관습에 의하여 인정되는 확대가족이나 공동체의 구성원, 후견인 기타 아동에 대한 법적 책임자들이 아동의 능력발달에 상응하는 방법으로 적절한 감독과 지도를 행할 책임과 권리 및 의무를 가지고 있음을 존중하여야 한다.

### 제31조

1. 당사국은 휴식과 여가를 즐기고, 자신의 연령에 적합한 놀이와 오락활동에 참여하며, 문화생활과 예술에 자유롭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

리를 인정한다.

2. 당사국은 문화적·예술적 생활에 완전하게 참여할 수 있는 아동의 권리를 존중하고 촉진하며, 문화, 예술, 오락 및 여가활동을 위한 적절하고 균등한 기회의 제공을 장려하여야 한다.

## □ 대구광역시달서구 아동친화도시 조성에 관한 조례

제8조(아동 참여보장) 구청장은 아동에게 영향을 미치는 모든 정책과 활동에 대해 아동이 자신의 의견을 자유롭게 표현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를 마련하고 아동의 의견이 정책에 반영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